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2월 1일

발 의 자 : 김인수·이양섭·김학철·박우양·
이의영·황규철·김봉희 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중 자문위원회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 (안 제18조)

3. 조례안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 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10인” 을 “20인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17조(생 략)	제1조 ~ 제17조(현행과 같음)
제18조(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 략)	제18조(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10인</u> 이내로 구성하며 기업인 각계 전문가, 중소기업 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	② ----- ----- <u>20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